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① + 세액공제 25%^②

⇒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 ~ 최대 63% 절세효과*

① (비용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의 50%

*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의 50%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 : '14.7.22)

▪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 : '14.7.2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시행일 : '15.3.13)

□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가입예시】 月 25만원 ×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절세효과】 최소 372만원(31%)에서 최대 756만원(63%) 절세효과 발생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 세율 (a)	세액 공제율 (b)	절세율* (c=a+b)	1,200만원 납입 時		
					절세금액	실제부담액	계
법인기업	2억원 이하	10%	25%	35%	420만원	780만원	1,200만원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45%	540만원	660만원	1,2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7%	564만원	636만원	1,200만원
개인기업	1,200만원 이하	6%	25%	31%	372만원	828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0%	480만원	720만원	1,20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588만원	612만원	1,20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720만원	480만원	1,20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63%	756만원	444만원	1,200만원

*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미포함)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법령내용 발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일반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내용 발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3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생략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4)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제1항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2호라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0항제4호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는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는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10조 ①3)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세액공제액 : $\max(①, ②)^*$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1~3년차 : 15%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4~5년차 : 10%
- ㉣ 중견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8%
- ㉤ 일반기업 : 2% + 당기 발생액 / 당기 기업회계상매출액 × 50% (한도 3%)

*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을 공제액을 함

** '14년도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15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발생액

□ 연구·인력개발비 中 중소기업 기여금을 인력개발비로 인정

- (인력개발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2호 라목)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인력개발비 해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7조 ⑩ 4)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항목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혜택

- (이월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4 ①)
- (중복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27 ④)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등과 중복 적용 가능
- (최저한세의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① 3)
 - * 최저한세 세율 : 중소기업의 경우 7%
 - 非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4 12, 동법 시행령 §4 ⑥ 1)
 -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 20%

□ 유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은 시행령(제2조)에 별도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원칙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非중소기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법인세법		중소기업 기여금	소득세법	
수	익		수	익
(-) 비	용	비용으로 계상 (납입금 전액)	(-) 비	용
당 기 순 이 익 ¹⁾			당 기 순 이 익 ¹⁾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			⋮	
사업년도소득금액 ²⁾			사업소득금액 ²⁾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제			(-) 소 득 공제	
과 세 표 준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 × 25%)	(-) 세액감면·세액공제	
결 정 세 액			결 정 세 액	
		절세효과 (납입금의 31%~63%)		

1) 회계상 소득 — 세무조정으로 차이조정 —> 2) 세법상 소득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단위 : 원)

지급일자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a)	이자 (b)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c)	차감 후 지급액(a+b-c)
2017-9-17	9,250,000	71,202	11,020	9,310,182

【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

(단위 : 원)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세액공제
	차변	대변	사업소득세	법인세	
공제부금 납입 시	인력개발비 250,000	보통예금 250,000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 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금으로 인정 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매 사업년도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	보통예금 9,310,182 선급법인세 11,020	인력개발비 ¹⁾ 2,250,000 잡이익 ²⁾ 7,000,000 이자수익 71,202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 조정은 필요 없음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 조정은 필요 없음	감면세액 납부 필요 ³⁾
공제금 수령 시 ⁴⁾	-	-	-	-	-

1) 당기 비용인식 분 ('17.1월 ~ '17.9월, 9개월×250,000원)

2) 전기 비용인식 분 ('14.9월 ~ '16.12월, 28개월×250,000원)

3)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감면세액 추징 방법은 관련 세법 개정 시 추후 공지

4)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하여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기업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음. 다만, 공제금 수령한 다음연도 2월달 급여 지급 시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누계액을 총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 * 핵심인력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불필요
- * 공제납입금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공제부금” 등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인력개발비, 인건비(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등 기업 편익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핵심인력이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국세법령 질의회신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제 목]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요 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 (연말정산)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신고기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19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2020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중소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본 안내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관련부처 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인력이 만기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1항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Q. (법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세금감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칙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13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종 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 득금액	×	법 제29조의6제1항 에 따라 부담한 기 여금	×	50%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금액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 ③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Q.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A.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Q. 세금감면 계산식 및 감면효과는?

A 1. 감면세액 계산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6조의6 2항)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	50%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A2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감면의 효과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35.4백만원인 핵심인력이 만기공제금을 수령했을 때를 가정하면 세금부담액은 법개정 전 1,961,460원에서 개정 후 1,518,666원으로 442,794원만큼 세금감면효과가 있습니다

◆ 세금 부담액 시뮬레이션

· (핵심인력 연봉) 35.4백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18,060천원, 공제대상 가족수 3명(20세이하 1명)

구 분	법개정 전 세금부담	법개정 후 세금부담
총급여(소득금액)	53,460,000	53,460,000
근로소득공제	12,423,500	12,423,500
근로소득금액	41,037,000	41,037,000
과세표준	24,676,400	24,676,400
기본세율	15%	15%
산출세액	2,621,460	2,621,460
(-)세액감면·공제	660,000	1,102,794 ^{주1)}
총 세부담액	1,961,460	1,518,666

주1) 세액감면·공제 = 660,000(근로소득세액공제) + 442,794(내일채움공제세액감면)= 1,102,794

* 내일채움공제 세금 감면액 = 2,621,460 * $\frac{41,037,000}{41,037,000} * \frac{18,060,000}{53,460,000} * 50\% = 442,794$